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209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변론 종결2016. 11. 16.

판결 선고2016. 11. 3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184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0. 12. 29. 접수 제105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D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0. 12. 8. 접수 제981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E 답 1,311.4㎡ 및 F 답 2,42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76. 7. 14. 접수 제1976호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등기부 갑구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자 A의 주소지가 '진도군 무산시 남주 G'로 기재되었고, 2005. 12. 6.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A의 주소가 '부산 남구 H'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0. 12. 8. 접수 제9813호로 1998. 11.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12. 29. 접수 제10538호로 2010.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1. 2. 24. 제1846호로 2011. 2. 2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생존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 D은 사망한 D의 모(母)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뒤 이를 피고 C, B에게 순차 이전하였는바, 이는 각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모친인 A으로부터 전남 진도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망인이 사망한 후부터 위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 D의 모친인

A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 출생하였고, 자녀로 J, K, L를 두고 있으며, 1977. 12. 6.부터 1982. 8. 25.까지, 1982. 9. 28.부터 1992. 8. 14.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등기명의인 A의 주소지로 등재된 '부산 남구 H'에 전입하여 거주해온 사실, 피고 D의 모(母)인 망 A은 M 출생하였고, 자녀로 D, N을 두고 있으며, 1982. 5. 11.까지 경북 칠곡군 O에서 거주하다가 1982. 5. 12.부터 1998. 11. 24. 사망할 때까지 부산 남구 P, 같은 구 Q, R, 같은 구 S에서 각 거주해온 사실, 피고 D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의 피상속인란에 망 A의 주소로 '부산 수영구 S'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초 소유자의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남구 H' 및 그 지상건물은 1974. 8. 1.부터 2001. 4. 9.까지 원고의 남편인 T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7. 14. 접수 제19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A은 원고(I생)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이 위 각 토지가 D의 모(母)인 A(M생)의 소유임을 전제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및 그로부터 순차 경료된 피고 C,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세금을 피고 D이 계속 납부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A(M생)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나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지방세가 피고 D에게 부과된 시기는 피고 D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 그의 모친인 A(M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예선

별지